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아이수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53
----------	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09일
발 의 자: 아이수루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동길, 김 경, 김기덕,
김성준, 김인제, 박강산,
박수빈, 박승진, 박유진,
박철성, 봉양순, 서준오,
성흠제, 송도호, 송재혁,
왕정순, 우형찬, 유정희,
이민옥, 이병도, 이상훈,
이소라, 이승미, 이영실,
이용균, 이원형, 임규호,
임만균, 임종국, 전병주,
정준호, 정진술, 최기찬,
최재란, 한 신 의원(35
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, 지원 대상을 ‘6개월 이상 계속해 서울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’로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결혼한 이주여성 등 외국인 임산부는 주민세와 지방세 등 납세의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,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비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바,
- 이에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기준을 개선하여, 차별행정 논란을 해소하고 ‘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’는 조례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교통비 지원대상에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임산부를 포함함(안 제4조의4 제1항).

나. 외국인등록증 등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외국인 임산부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함(안 제4조의4 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,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, 「출입국관리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등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임산부”를 “임산부(「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임산부를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외국인주민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<u>임산부</u>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② 시장은 <u>제1항</u>에 따른 임산부 교통비를 현금, 교통카드,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④ 시장은 <u>제3항</u>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 ① - ----- ----- <u>임산부(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임산부를 포함한다)</u>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외국인주민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.</u></p> <p>③ ----- <u>제1항 및 제2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⑤ ----- <u>제4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⑤ ~ ⑦ (생략)

⑥ ~ ⑧ (현행 제5항부터 제7항
까지와 같음)